

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 www.myhome.go.kr 마이홈 콜센터 1600-1004 마이홈 상담센터 전국 36개소	보 도 자 료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 11. 17.(목) 총 매 (본문 2매)	
	담당부서	• 주택정비과 과장 강태석, 사무관 강치득, 주무관 김준영 • ☎ (044)201-3392, 3386	
2016년 11월 1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17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%→75%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'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(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) 및 의결권의 각각 75%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(remodeling, 새단장)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「주택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을 11월 22일(화) 입법예고한다.
 - 또한,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%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.
-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는 「주택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'17년 1월에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
 -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- * 의견제출처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(전화 : 044-201-3386, 팩스 044-201-5532)이고,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할 경우, 세부 항목인 '정보 마당-법령 정보-입법 정보'에서 의견을 제출 가능함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강치득 사무관(☎ 044-201-3392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